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,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 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)

위원회는 반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부의 사항)

위원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① 지속가능경영(ESG) 전략 기본 방향 및 계획
- ② 지속가능경영(ESG) 성과 및 추진 활동
- ③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심의
- ④ 환경(E), 사회(S), 거버넌스(G) 영역 관련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1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지속경영 관련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.

부 칙 (2022. 3. 29)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 3. 26)

이 규정은 2024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 3. 26)

제 1 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4 조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